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방법

글\_ 조완석(공인회계사)

**일** 반적인 벤처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한번쯤은 받아봤을 것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성격의 재원이나 그 종류는 건별로 다름 만큼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호에서 본 저자가 하고자 하는 바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함이다. 무슨 질문인가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파악될 것이다.

얼마전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회사의 담당자가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즉 과거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전액 예수금 등의 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후 상환의무 여부가 판정되는 시점에 가서 상환의무가 없는 부분만큼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이익 등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해왔으나 기업회계기준 해석을 엄밀히 검토해 보면 반드시 그렇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해석의 변천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 상환의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고보조금을 취득하는 시점에 회사의 순자산가

액이 증가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석이 나온 것이 국고보조금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자산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취득자산의 상각비와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는 경우 만약 회사가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후 기말시점까지 아무런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 언급한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위에서 언급한 회계처리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러면 기존에 회계처리 해 왔던 사항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개별 건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또한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시기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적 관행을 적용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한 방법이 상환의무 여부가 판정되는 시점까지 예수금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상환의무가 취득시점에서 판정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회사의 기간손익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회사에 현재 국고보조금이 있는 상태인가?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의 상환의무 여부가 언제 결정이 나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한 기간손익을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